#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

# 1.0 목적

규칙 제13장(정부승인차액계약)의 규정에 의한 정부승인차액계약(이하 "차액계약")의 관리, 차액계약 관련자료 검토, 차액계약 인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및 차액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액계약에 의한 전력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.

### 2.0 적용범위

2.1 본 절차는 차액계약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.

#### 3.0 책임

- 3.1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에 의한 전력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2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.3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# 4.0 참고자료

- 4.1 전기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시행령
- 4.2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에 관한 고시(이하 "차액계약고시"라 한다)
- 4.3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(이하 "차액계약규정"이라 한다)

#### 5.0 용어의 정의

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규칙 제1.1.2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5.1 차액계약(VC; Vesting Contract)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.
- 5.2 계약전력량(VCQ; Vesting Contract Quantity)
  차액계약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전력량으로서 시간별계약전력량
  (HVCQ; Hourly Vesting Contract Quantity)과 연간예상전력량(YVCQ;
  Yearly Vesting Contract Quantity)으로 구분된다.

- 5.3 기준가격(SP; Strike Price)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하며,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(ISP; Investment Strike Price)과 연료비 기준가격(FSP; Fuel Strike Price)의 합으로 구성된다.
- 5.4 차액정산금(VCP; Vesting Contract Payment) 차액계약 조건에 의해 거래한 결과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채권 혹은 채무금액을 말한다.
- 5.5 차액정산(VCS; Vesting Contract Settlement)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.

## 6.0 차액계약 자료 제출, 검토 및 계약체결

- 6.1 차액계약 체결 전 관련자료 사전 제출
- 6.1.1 차액계약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계약기간 개시 8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상세내용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6.1.1.1 자산명세서
  - 1. 사업소별/자산종류별 자산리스트
  - 2. 자산의 취득시기, 감가상각방법, 취득가액, 잔존가액, 내용연수, 감가상 각비, 감가상각누계액
  - 3. 재평가 시기, 재평가차액, 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
  - 4.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
- 6.1.1.2 운전유지비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
  - 1. 사업소별 손익계산서
  - 2. 발전기별 원가명세서
  - 3. 전기사업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
  - 4.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
- 6.1.2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발전 기 운영자료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차액계약 대상 기간의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정지일정 최신자료 및 근 거서류
  - 2. 발전기별 발전량 실적 자료
  - 3.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
- 6.1.3 차액계약 대상 사업자가 6.1.1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외부 전문기관 의 검증 후 관련 증빙 회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차액계약 규정에 따른다.

- 6.2 차액계약 체결 전 제출 자료의 검토
- 6.2.1 전력거래소는 6.1.1 규정에 의거 제출된 차액계약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, 해당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차액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회계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.
- 6.2.2 전력거래소의 검토결과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차액계 약 대상 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제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.
- 6.2.3 전력거래소는 회계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 문기관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.
- 6.2.4 전력거래소는 해당 회계자료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고한다.
- 6.3 차액계약 인가(변경) 검토
- 6.3.1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 시행령 제20조의 4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 사전 협의· 중재하며 차액계약 적용(안)을 제시할 수 있다.
- 6.3.2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시 제출한 관련 자료 사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력거 래소는 기준가격 산정 등 차액계약 세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.
- 6.3.3 전력거래소는 계약체결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6.3.4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 인가 완료 후 차액정 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6.3.5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차액계약서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6.3.2 및 6.3.4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6.4 계약체결 신청지연시 업무처리
- 6.4.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차액계약 인가신 청이 지연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와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.

# 7.0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

- 7.1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과 연료비 기준가격의 합으로 구성된다.
  - 단, 발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7.1.1 고정비 기준가격
- 7.1.1.1 발전기별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총 필요수입금액을 연간예상전력량 으로 나누어 산정하며, 계약기간 총 필요수입금액은 투자비에 대한 감가

- 상각비, 운전유지비, 법인세비용, 투자보수 등으로 구성된다.
- 7.1.1.2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내 시간별 동일한 값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시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.
- 7.1.1.3 고정비 기준가격은 발전기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발전소별 혹은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.
- 7.1.1.4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7.1.2 연료비 기준가격
- 7.1.2.1 발전기별 연료비 기준가격은 월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발전기별 연료소비 특성 및 열량단가와 필요시 기타 비용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7.1.2.2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7.2 계약전력량
- 7.2.1 시간별계약전력량은 시간별 차액정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량으로 계약 기간 이전 실적자료와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, 전력예비율 전 망, 송전제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7.2.2 시간별계약전력량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- 7.2.3 연간예상전력량은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 기준량으로서 시간 별계약전력량에 계약기간 내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.
- 7.2.4 강수량 영향, 연료수급 영향, 열제약 등으로 발전출력 변동이 있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시간별계약전력량 및 연간예상전력량을 별도 적용할 수 있다.
- 7.2.5 계약전력량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7.3 고장정지율(시간) 및 예방정지율(시간)
- 7.3.1 고장정지율(시간)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(시간)은 전력거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"고장정지통계기준"을 기초로 하여 계약기간 이전의 고장정지율 (시간)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(시간)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.
- 7.3.2 계획예방정비정지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하고 전력거래소에 의해 확정된 계획기간을 반영한다.
- 7.3.3 수력, 부생가스 등 시간별계약전력량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7.3.1 및 7.3.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7.3.4 고장정지율(시간) 및 예방정지율(시간)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
# 8.0 발전원별 기준가격 산정

8.1 부생가스발전기 기준가격 산정

- 8.1.1 부생가스발전기의 기준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자가발전대체가격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29.>
- 8.1.2 계통한계가격은 제2.4.2조(한계가격의 결정)의 전력시장가격이며, 자가발전대체가격은 부생가스공급원의 자가용전기설비 대체가격으로서, 고정비기준가격, 변동비기준가격과 기타비용기준가격의 합으로 산정하며,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29.>
- 8.2 수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
- 8.2.1 수력발전기 기준가격은 7.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한다.
- 8.2.2 수력발전기 연료비 기준가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.
- 8.2.3 수력발전기의 시간별계약전력량, 고장정지율(시간) 및 예방정비정지율(시간)은 적용하지 않는다.
- 8.2.4 수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8.3 석탄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석탄발전기 기준가격은 7.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하되,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8.4 원자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원자력발전기 기준가격은 7.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하되, 세부사항 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
#### 9.0 차액계약 차액정산

- 9.1 차액계약의 정산
- 9.1.1 발전사업자의 최종정산금은 전력시장 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- 9.2 발전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
- 9.2.1 차액정산금의 산정 원칙
- 9.2.1.1 전력거래소는 발전기별 시간별 계약전력량,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시간별 차액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차액정산금(VCP<sub>i,t</sub>)= 차액금액 + 위약금 + 기타정산금
- 9.2.1.1.1 차액금액은 시장가격, 기준가격, 계약전력량, 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사정한다.
- 9.2.1.1.2 위약금은 발전기별 시장가격, 기준가격 및 부족전력량(계약전력량 에서 발전량을 차감한 값)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9.2.1.1.3 기타정산금은 거래시간별 기대이익정산금(MAP), 거래시간별 용량 정산금(TPCP) 등을 반영한다. <개정 2021.12.28.>
- 9.2.1.2 시간별 계약전력량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기는 9.2.1.1.2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
- 9.2.1.3 시간별 계약전력량을 산정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일별 기간으로 차 액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.
- 9.2.1.4 차액정산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9.3 발전원별 차액정산기준
- 9.3.1 부생가스발전기는 거래시간별 차액금액을 산정하되 거래시간별 발전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.
- 9.3.2 수력발전기는 9.2.1.1에도 불구하고, 거래일별 발전량 실적을 기준으로 차액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.
- 9.3.3 발전원별 차액정산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.
- 9.4 전력구매자의 차액정산
- 9.4.1 전력구매자의 최종정산금은 전력시장 정산금의 총액에서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.
- 9.4.2 직접구매자에 대한 차액정산 직접구매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직접구매자 부담 정산금 중에서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한다. 즉,

 $TVCP_{k,t} = VCPESC_{k,t} + VCPCSC_{k,t} + VCPUSC_{k,t}$ 

여기서.

 $VCPESC_{k,t}(Vesting Contract Payment among the Energy Settlement for a Consumer) 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(<math>v$ )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(원)

$$\text{VCPESC}_{k,t} = \text{ESC}_{k,t} \times \sum_{v} \text{VCGTR}_{v,t} - \sum_{v} \text{TFC}_{v,t} \times (\text{PEC}_{k,t} \, \div \, \text{TET}_t)$$

ESCk+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량 정신금(원)

VCGTR<sub>v,t</sub>(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) :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(v)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(%)

 $VCGTR_{v,t} = AMGO_{v,t} \div TET_t$ 

 $TFC_{v,t}(Total\ Fuel\ Cost)$  : 시간대별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(v)의 연료비용 (원)  $TFC_{v,t}=QPC_v imes AMGO_{v,t}^2+LPC_v imes AMGO_{v,t}+NLPC_v imes GF_{v,t}$ 

GF<sub>v.t</sub>: 실발전 판정 Flag

 $PEC_{k,t} = Max\{(MEC_{k,t} - ASRS_{k,t}), 0\} \times TLF_{k,t} \times (1 + DLFC) \times (1 + LLFC_k)$ 

 $MEC_{k,t}(Measured\ Energy\ for\ a\ Consumer)$  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

 $ASRS_{k,t} = SRS_{k,t} \times (1 - LFRE_k) \times SROF_k$ 

 $ASRS_{k,t}(Adjusted\ SRS_{k,t})$ :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시간대별 전력량에 송·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손실률이 적용된 값

 $SRS_{k,t}(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): 직접전력거 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<개정 <math>2025.4.9.$ >

LFRE $_k$ (Loss Factor for Renewable Energy) : 개별직접구매자의 직접전력거래 전력량에 적용되는 손실계수로, 송·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손실률 SROF $_k$ (Supplied Renewable energy On Flag) : 전기사용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 여부 표시기로,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공급받는 개별 전기사용자인 경우 1, 그렇지 않으면 0

 $TLF_{k,t}$ :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,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 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.

DLFC(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) :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

 $LLFC_k(Locational\ Loss\ Factor\ fora\ Consumer)$ :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

 $TET_t(Total\ Energy\ Traded)$ :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 량

 $VCPCSC_{k,t}(Vesting\ Contract\ Payment\ among\ the\ Capacity\ Payment\ for\ a\ Consumer)$ 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용량정산금액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(v)의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(원)

$$\text{VCPCSC}_{k,t} = \text{CSC}_{k,t} \times \sum_{v} \text{VCGTR}_{v,t} - \text{PEC}_{k,t} \times \sum_{v} (\text{ISP}_{v,t} \times \text{VCGTR}_{v,t})$$

CSCk,t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용량정신금액(원)

VCGTR<sub>v,t</sub>(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) :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(v)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(%)

 $PEC_{k,t}(Purchased\ Energy\ by\ a\ Consumer)$  :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 $ISP_{v,t}$  :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별 시간대별 고정비 기준가격(원/kWh)  $VCPUSC_{k,t} = USC_{k,t} imes \sum VCGTR_{v,t}$ 

 $VCPUSC_{k,t}(Vesting Contract Payment of Uplift Settlement for a Consumer) =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부가정산금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(<math>v$ )의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(원)

 $USC_{k,t}(Uplift Settlement for Consumers)$  :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 에 대한 부가정산금(원)

VCGTR<sub>v,t</sub>(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) :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(v)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(%)

직접구매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.

$$TVCP_k = \sum_{t} TVCP_{k,t}$$

9.4.3 판매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<조번호 변경 및 개정 2024.10.29.> 판매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에서 모든 직접 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즉,

$$TVCP_{s,t} = (\sum_{i} VCP_{i,t} - \sum_{k} TVCP_{k,t}) \times \frac{PES_{s,t}}{PES_{s,t} + \sum_{d} UPEL_{d,t}}$$

여기서.

TVCP<sub>s,t</sub>(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) : 판매사업자의 거래 시간별 차액정산금

VCP:,: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

 $TVCP_{k,t}(Total\ VC\ Payment\ for\ a\ Consumer)$  :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최종 차액정산금 (원)

PES<sub>s,t</sub>(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):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 에 대한 구매 전력량

$$PES_{s,t} = TET_t - \sum_{k} PEC_{k,t} - \sum_{d} PEL_{d,t}$$

 $TET_t(Total\ Energy\ Traded)$ :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 거래량

 $PEC_{k,t}(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)$ :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 $\sum_{d}$  PEL $_{d,t}$  (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) : 구역전기사 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의 총합

$$\sum_{d} PEL_{d,t} = \sum_{d} UPEL_{d,t} + \sum_{d} XPEL_{d,t}$$

 $UPEL_{d,t}(Purchased\ Energy\ by\ a\ Local\ sales\ company\ Under\ VC)$  :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$$\text{UPEL}_{d,t} = \text{MEL}_{d,t} \times \text{TLF}_{d,t} \times (1 + \text{DLFL}) \times (1 + \text{LLFL}_d)$$

 $XPEL_{d,t}(Purchased\ Energy\ by\ a\ Local\ sales\ company\ eXcept\ for\ VC)$  : 차액계약이 없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 량

$$XPEL_{d,t} = MEL_{d,t} \times TLF_{d,t} \times (1 + DLFL) \times (1 + LLFL_d)$$

MEL<sub>d,t</sub> (Measured Energy for a Local sales company) : 구역전기사업 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

 $TLF_{d,t}$ : 거래시간대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,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.

DLFL(Distribution Loss Factor for Local sales companies): 구역전 기사업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계수

 $LLFL_d(Locational\ Loss\ Factor\ for\ a\ Local\ sales\ company)$ : 구역전 기사업자의 실제 계량기의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계수

판매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.

$$TVCP_s = \sum_{t} TVCP_{s,t}$$

9.4.4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<조번호 변경 및 개정 2024.10.29.>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의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을 차감한 금 액에 해당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. 즉.

$$TVCP_{d,t} = (\sum_{i} VCP_{i,t} - \sum_{k} TVCP_{k,t}) \times \frac{UPEL_{d,t}}{PES_{s,t} + \sum_{d} UPEL_{d,t}}$$

여기서,

TVCP<sub>s,t</sub>(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) :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

VCP<sub>i,t</sub>: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

 $TVCP_{k,t}(Total\ VC\ Payment\ for\ a\ Consumer)$ :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최종 차액정산금 (원)

PES<sub>s,t</sub>(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):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 에 대한 구매 전력량

$$\text{PES}_{s,t} = \text{TET}_t - \sum_k \text{PEC}_{k,t} - \sum_d \text{PEL}_{d,t}$$

 $TET_t(Total\ Energy\ Traded)$ :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 거래량

 $PEC_{k,t}(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)$ :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 $\sum_{d}$  PEL<sub>d,t</sub> (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) : 구역전기사

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의 총합

$$\sum_{d} PEL_{d,t} = \sum_{d} UPEL_{d,t} + \sum_{d} XPEL_{d,t}$$

UPEL<sub>d,t</sub>(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Under VC) :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$$UPE_{Ld,t} = MEL_{d,t} \times TLF_{d,t} \times (1 + DLFL) \times (1 + LLFL_d)$$

 $XPEL_{d,t}(Purchased\ Energy\ by\ a\ Local\ sales\ company\ eXcept\ for\ VC)$  : 차액계약이 없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

 $XPEL_{d,t} = MEL_{d,t} \times TLF_{d,t} \times (1 + DLFL) \times (1 + LLFL_d)$ 

 $MEL_{d,t}$  (Measured Energy for a Local sales company) : 구역전기사업 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

 $TLF_{d,t}$ : 거래시간대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,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.

DLFL(Distribution Loss Factor for Local sales companies) : 구역전 기사업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계수

 $LLFL_d(Locational\ Loss\ Factor\ for\ a\ Local\ sales\ company)$  : 구역전 기사업자의 실제 계량기의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계수

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.  $TVCP_d = \sum_t TVCP_{d,t}$ 

## 10.0 차액계약 분쟁해결

- 10.1 차액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
  - 2. 분쟁 조정(안) 제시
  - 3. 기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
- 10.2 차액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규칙 제7장 분쟁조정에 따른다.
- 10.3 차액계약 당사자는 분쟁해결의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.